

## 제 15 장 전자상거래

### 제 15.1 조 목적

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,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,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.

### 제 15.2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

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7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8장(금융서비스) 및 제11장(투자)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그러한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.

### 제 15.3 조 관세

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15.4 조 국내 규제

1. 각 당사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과, 적절한 경우, 그 밖의 국제 기준·지침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2.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- 가.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적 부담의 최소화, 그리고
  - 나.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전자상거래의 산업 주도 발전을 지원하도록 보장

### 제 15.5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

1.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의 당사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인증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- 가. 그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의 결정, 그리고
- 나.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 
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유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경우, 당사국은 전자금  
융거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  
이 특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 또는 정책에 따라 공인된 기관  
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3. 양 당사국은,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기초하여,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  
하는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한다.
4.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 
노력한다.

#### 제 15.6 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

1.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, 다른 형태의  
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치와 최소한 동등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 
유지한다.
2.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  
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
#### 제 15.7 조 종이없는 무역

1.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  
한다.
2. 각 당사국은 전자적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 
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.
3. 종이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함에 있어, 각 당사국  
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방법을 고려한다.

#### 제 15.8 조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

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 
유지한다.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,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  
제 기준·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.

## 제 15.9 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

1.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아니한 스팸과 텔레마케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제를 조건으로, 요청하지 아니한 상업용 전자 서신의 규제와 관련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. 협력 분야는 스팸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기술적, 교육적 및 정책적 접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.

## 제 15.10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**전자인증**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전자서명**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전자기록에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자료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.

**전자적 전송**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송을 말한다.

**개인정보**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.

**무역행정문서**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. 그리고

**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**이란,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,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,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서신<sup>86</sup>(음성 서비스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---

<sup>86</sup> 이 정의의 목적상, “전자 서신” 이란 모사전송 서신을 포함할 수 있다.